

예 산 총 칙

2022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995,662,414	29,869,872
일반회계		911,388,561	27,341,657
특별회계		84,273,853	2,528,216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자활기금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35,600,513	1,068,01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5,600,513	1,068,015
	기타특별회계	48,673,340	1,460,2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32,318	27,970
	자활기금특별회계	534,688	16,041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7,176,000	215,2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13,381	6,401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953	29
	주차장관리운영특별회계	1,845,610	55,368
	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97,576	5,927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736,115	22,083
	수질개선특별회계	37,036,699	1,111,10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224,789천원으로 하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2,448,12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연말까지 교부된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명시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